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0 | 2025.09.15 (2025.09.08~2025.09.1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 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식품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내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종과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하려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4주(임시총회의 경우 8주) 전까지 하도록 개선하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 확대 등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8인)**」,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절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

기술과 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술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고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6인)**」 ,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9.15.~18.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재위>, <외통위>, <문체위>, <환노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중소벤처기업부)..... 7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기획재정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10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0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3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4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부).....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8인).....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0인).....1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1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1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1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0인)	2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2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3인)	24
•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등 12인)	2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5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26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6인)	26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7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	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2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9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30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30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3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2인)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기업지배구조] 개정 상법 하에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확인 받은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 중소기업과 유관 협·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실효적 보호방안 제시	2025-09-10
---------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음.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1.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함

2.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기술침해 여부 판단을 돕고 신속한 재판을 유도할 예정임

3.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접수 단계에서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함. 조사 단계에서 중기부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함. 조치 단계에서는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함

(2) ☐ 손해배상액 현실화

1. 손해액 산정기준의 개선 추진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함. 또한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

2.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재 법관의 재량으로 많이 판단되는 손해액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또한 현재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기업에게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하여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임

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함. 수집된 데이터는 기술침해 피해기업,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 법원 등이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3)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1.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 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하여 기술보호 정책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특히 지하철역 전광판, 라디오 광고 등 정책 홍보 수단을 다각화하여 기업들이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추진함

2.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 또한 중기부 R&D 수행기업 중 정부출연 10억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3.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현재 1.7만여건인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현재 영업비밀에 대해 운영 중인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여 추진함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1.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구성 및 신문고 운영

피해 중소기업들이 어느 부처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신설함

2.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 집중 단속을 실시. 또한 사건의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중기부 등 유관 부처와 수사기관에 제공함

3.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현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를 신설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명백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직권조정을 도입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소액 사건에서 조정부의 조정안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조정부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 우선 발표
- 프로젝트별로 기업 중심의 민관 추진단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해결 논의 지속
-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패키지 지원 통해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 창출 도모

2025-09-10

기획재정부는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지난 8.2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소재·부품 분야,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 K-융합 분야에 대해 15대 프로젝트 발표

금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 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융합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임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SiC 전력반도체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임

* SiC전력반도체 세계시장 규모(억불): ('24) 34 → ('30) 103 (연평균 20% 성장)

LNG 화물창은 한국이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는 1위 국가이나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임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그간 상당한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은 확보하였으나,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등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기술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임

* 그래핀 세계시장 규모(억불): ('24) 9.9 → ('33) 83 (연평균 36.5% 성장)

특수탄소강은 한국이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및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는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할 예정임

K-식품은 한류와 K-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매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이며,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 K-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과 주관부처가 중심이 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	2026-09-10 시행 예정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26 시행 예정
---------	----------------	------------------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난 후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0841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보상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2025-09-09 시행
---------	----------------	---------------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장기 자본여력을 확대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침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12. ~2025.10.22.

임직원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내국법인의 국채통합계좌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팩스: 044-215-8063\)](tel:044-215-4223)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12. ~2025.10.22.
-------	-----------------	-----------------------------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 수요를 보완하고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종과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 배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정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tel:044-215-4136)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22. ~2025.10.22.
-------	--------------------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되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tel:044-215-413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12.
~2025.10.22.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되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tel:044-215-4136)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9.09.
~2025.10.20.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68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 ① 셀프충전설비 안전기준 마련 (안 제41조제2항 및 별표4)
- ② 셀프충전설비로 전환 시 변경완성검사 대상 지정 (안 제51조제2항)
- ③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 (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4)
- ④ 특정사용시설 중 단독주택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 (안 별표 20)
- ⑤ 노후 소형저장탱크 교체 시 이격거리 기준 완화 (안 부칙 제367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tel: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11.
~2025.10.22.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 공사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25.11.2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전력량계는 건물로 인입되는 전력선과 직접 연결되어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사임에도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바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을 현행화**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전기사업법」과 동일하게 1,000볼트로 변경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tel:044-203-3895)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025.09.09.
~2025.10.2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라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전화: 044-201-7384, 팩스: 044-201-7394\)](tel:044-201-738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8인)

2025-09-08 발의

현행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높은 지분율 요건으로 인해 실질적 행사에 제약이 큼. 이로 인해 ESG·지배구조 개선 등 중요한 경영 현안에 대해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도 제한되고 있음

반면, 미국은 권고적(advisory) 주주제안 제도를 두어 주주와 이사회 간 건설적 소통을 제도화하면서도 경영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일본은 절대 주식 수 기준을 병행하여 주주제안 문턱을 낮추고 있음.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와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관여활동 및 스튜어드십 코드 실천을 지원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한편, 현재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이 2주로 짧아 위임장 대결 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회사가 주주제안을 무력화할 의도로 공고를 촉박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4주(임시총회의 경우 8주) 전까지 하도록 개선하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 확대 등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여 주주권 보장과 이사회 자율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가치 제고 및 해외 투자 유인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5-09-08 발의

현행법상 증권지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2025-09-08 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5-09-10 발의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의2)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0인)

2025-09-10 발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바 있음. 이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2차 피해나 금융사기 등의 추가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유출 직후 즉시 피해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미싱,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수의 경로를 통해 이동·가공·재판매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유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함 (안 제34조제2항 등)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5-09-11 발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 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분쟁에 관해서는 금융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42조)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2025-09-12 발의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됨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중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 39조제2항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5-09-08 발의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2025-09-08 발의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익법인을 통한 대주주의 경영지배 및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5-09-10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2025-09-10 발의

항공제조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공기 부분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국가에서 생산·유통되므로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산업에 해당함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정부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MRO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항공기 정비·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의 원활한 수급 및 원가 절감이 핵심 경쟁요인임. 이에 미국·EU·일본·대만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함으로써 자국의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협정이 아닌 자국법을 개정하여 관세를 감면해 왔는데, 주요국과의 FTA 체결·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하였고, 202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관세감면율을 축소하여 2030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항공기 부분품이 복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유통체계상 해외 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비율은 불과 20% 안팎에 그치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이 시작되고 종국적으로 폐지된다면 항공기 부분품의 수급가격 인상으로 국내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9조제6항제1호)**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2025-09-11 제출

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6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5-09-11 제출

현행법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행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은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안 제14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2025-09-11 발의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의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25-09-08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소속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권한을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의 한계가 있으며, 일반 침해사고도 향후 중대한 침해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침해사고 대책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이행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4 제6항, 제48조의7 신설, 제64조제3항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025-09-08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SKT 해킹 사례와 같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5-09-09 발의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포함하고,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0인)

2025-09-10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은 홈 가입자 서버(HSS)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 정보 등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32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2025-09-11 발의

최근 대포폰(명의 도용·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2025-09-12 발의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등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적 갈등 조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 지속 유통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 44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2025-09-12 발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2025-09-12 발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개하기까지의 기간을 이른바 ‘홀드백’이라 하는데, 이는 제작사, 배급사, OTT 등 영화업계의 관련 구성원들의 영화업계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없이 업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영화의 상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를 독식하면서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전망과 제작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2025-09-09 발의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 심화 및 물류비용 상승과 수출입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함

특히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우리나라는 복합 기능을 기반으로 유기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항만을 권역별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하여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을 통하여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2025-09-08 발의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해당 거래액이 급증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71억원에서 2024년 36조 9,891억원으로 증가해 5년 새 시장 규모가 2.1배 성장했음

그러나 배달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플랫폼사들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로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 배달료,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 매출액의 20% 내외를 플랫폼사에 지불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

민간 주도의 배달앱 자율규제로는 중개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2025-09-08 발의

최근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는 각종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곰표맥주’ 갈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음. 전용사업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이처럼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정당한 대항권 없이 협상력의 불균형을 겪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9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6인)

2025-09-09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스마트제조산업은 2028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제조업 선도국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혁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공급기업 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룸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 공급기업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스마트제조 기술 수준(미국 100% 대비 한국 중소기업 74.9%)과 체계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혁신 기술개발 및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등이 국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조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스마트제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기술과 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술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고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제조업의 미래 초격차를 구축하는 핵심과제임. 본 법률안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 스마트 제조데이터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5-09-10 발의

현행법은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위임된 고시에 의하면 비의도적 혼입 3% 이하의 식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등)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의원 등 12인)

2025-09-12 발의

유전자치료는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암과 같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과 유전자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유전자치료를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2025-09-09 발의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현행법 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5-09-09 발의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2025-09-09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4조의4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2025-09-10 발의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09-10 발의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퇴직급여 체불액이 8,229억 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안 제43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2025-09-10 발의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2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025-09-08 발의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 (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2025-09-11 발의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발전과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달종사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가입사실 증빙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종사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함에 위조·변조·누락의 우려가 없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 확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종사자는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고가의 유상운송 보험료로 인해 종사자가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2인)

2025-09-12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15(월) 14:00	- 정치에 관한 질문
	9/16(화) 14:00	-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9/17(수) 14:00	- 경제에 관한 질문
	9/18(목) 14:00	-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9/16(화) 09:00	- 법안 심사
외통위	전체회의	9/16(화) 13:3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법안 상정
국방위	전체회의	9/17(수) 10:00	-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9/16(화) 10:00	- 법안 심사
	체육관광법안소위	9/17(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18(목) 13:30	- 법안 의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9/16(화) 10:00	- 법안 심사
	환경법안소위	9/17(수)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15(월) 10:00	(의약품 통상압박 대응과 치료접근성 확보 위한)위험분담 계약제 발전방향 국회토론회	김윤·서영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9/15(월) 10:00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 실효적인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	김장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5(월) 10:00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박희승·백혜련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15(월) 10:00	관광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혁신 방안 : 3000만 시대 관광혁신 포럼	김교홍 의원실	국회도서관 대강당
	9/15(월) 13:30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 전략은?	박상웅·박성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6(화) 10:00	제3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2 차 미래소비자포럼	민병덕·강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9/17(수) 10:00	AI를 활용한 치안정책의 현재와 미래 : 국회 AI 포럼 세미 나	이인선·조승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7(수) 10:00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	김현정·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9/17(수) 13:30	방산수출 활성화와 핵심 장비/부품 국산화 제고 방안 세미 나 : K방산 이슈 세미나 ②	유용원·김병주 의 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8(목) 09:30	AI 모빌리티 경제와 고속도로 공간 혁신 정책토론회	전현희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대강당
	9/18(목) 11:50	AI·SW 정책 및 산업 현안 국회 보좌진 브라운백 포럼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9/18(목) 14:00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출범식 :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전 환, 신성장 동력 모색	주철현·권향엽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대강당
자료집 등	9/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0호(2025-17호) 발간	국회도서관	
	9/17(수)	「금주의 서평」 제746호(2025-37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8(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7호(2025-17호)	국회도서관	
	9/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		
	9/10(수)	「금주의 서평」 제745호(2025-36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12(금)	기업지배구조	개정 상법 하에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확인 받은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